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10.(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홍보담당관 소관】	구청장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1. 안 건 명

○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6년 8월 21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경제위원회 회부일자

○ 2026년 8월 24일(월)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Ⅰ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잉여금			
				소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1,077,820,499,745	1,084,637,135,369	964,593,934,960	120,043,200,409	37,342,282,515	15,523,831,600	64,270,786,220
일반회계	1,030,609,107,225	1,033,634,562,976	925,433,769,322	108,200,793,654	36,198,258,705	15,329,053,400	53,767,181,475
특별회계	47,211,392,520	51,002,572,393	39,160,165,638	11,842,406,755	1,144,023,810	194,778,200	10,503,604,745

Ⅱ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홍보담당관	13,523,000	13,523,000	13,523,000	0	100%

※ 징수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홍보담당관	2,297,497,000	2,115,766,339	-	-	181,730,661	92.09%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홍보담당관	181,730,661	0	6,561,000	4,000,340	95,559,650	75,609,671	0

라.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명시 · 사고이월) 사업 현황 : 없음

바.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1) 예산 이용 : 없음

2) 예산 전용

(단위 : 원)

부 서	세부사업	전용금액	사 유
합 계		8,653,000	
홍보담당관	구민공감 미디어채널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653,000	25.11.1.공동주택 승강기 정부광고 의뢰 중단으로 해당 예산 잔액을 구정홍보 언론사 광고비로 활용

3) 예산 이체 : 없음

Ⅲ 검토의견

1.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352만 3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징수율은 100%**로, 세입 징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세출 예산현액은 **22억 9,749만 7천원**으로, 이 중 **21억 1,576만 6,339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0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음.

○ 집행잔액은 **1억 8,173만 661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7.91%에 해당하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656만 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00만 340원, 낙찰차액 9,555만 9,650원, 지출잔액 7,560만 9,671원임.

○ 전체적인 세출 집행률은 92.09%이고 **집행률 70% 미만의 저조사업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이 9,555만 9,65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약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잔액도 7,560만 9,671원이 발생한 만큼,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원인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계약·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비 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예산 전용에 대한 검토

○ 홍보담당관은 「구민공감 미디어채널 운영」 사업에서 **865만 3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이는 2025년 11월 공동주택 승강기 정부광고 의뢰가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예산 잔액을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과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용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전용은 **회계연도 말인 11월에 발생한 사업 중단에 따른 잔액을 다른 광고비로 활용한 사례**인 만큼, 해당 광고비의 추가 집행 필요성이 회계연도 중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당초 편성된 광고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웠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5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은 **세입 징수율 100%, 세출 집행률 92.09%**로 전반적인 세입·세출 관리 및 예산집행은 양호한 수준이며, 집행률 저조사업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도 발생하지 않았음.

○ 다만, 세출 집행잔액 **1억 8,173만 661원 중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여부와 주요 사업별 불용사유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구민공감 미디어채널 운영」 사업의 **865만 3천원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잔액을 회계연도 말 다른 광고비로 활용한 것이므로, 전용의 불가피성과 추가 광고 집행의 필요성 및 예산 목적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최근 집행실적과 계약실적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